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정문・조 국

이기헌 • 박홍배 • 이수진

김문수 · 조계원 · 안태준

신정훈 · 노종면 · 복기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.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.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. 제20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 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.

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·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.

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도

록 제한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.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 중 "위원의"를 "위원, 전문위원의"로, "아니한"을 "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제5호에"를 "제1항제5호·제6호에"로, "사람의"를 "사람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흥회 업무와 밀접한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"로 한다.

7. 제5조의 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	
없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	6
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	
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	<u>위원, 전문위원의</u>
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	
<u>아니한</u> 사람	<u>아니하였거나 대통령</u>
	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
	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
	이 경과되지 아니한
<u><신 설></u>	7. 제5조의 진흥회 업무와 밀접
	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
	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
	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
	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
	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	② <u>제1항제5호·제6호에</u>
나 고문의 역할을 한 <u>사람의</u>	<u>사</u>
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	람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
정한다.	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

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
<u> 공무원의</u>